

'22년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



한국사학진흥재단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목 차^{*}

List of Contents

I	개 요	1
II	'22년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9

I

개 요

1. 목적 및 추진 경과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4. 주요 점검 항목



1. 목적 및 추진경과

가 목적

○ 추진 목적

- 정부의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규모 확대 및 기술사업화 등 업무 영역 다양화로 인한 현장의 회계처리 실태조사 강화 필요
-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보고·공개,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으로 산학협력단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나 추진경과

○ 실태점검 추진경과

- '17년부터 '21년까지 총 85개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대학 84개교, 전문대학 37개교, 원격대학 4개교 실시
- '22년 점검 대상 산학협력단은 대규모 5개교, 중규모 30개교, 소규모 5개교로 구성됨

< 연도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개교)

연도	대학		전문		원격	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사립	
'17	3	4	-	3	-	10
'18	2	4	1	3	-	10
'19	4	4	-	6	1	15
'20	6	11	2	5	1	25
'21	6	16	-	2	1	25
'22	4	20	-	15	1	40
계	25	59	3	34	4	125

○ '22년도 실태점검 추진경과

내 용	일 정
준비단계('22년 2월~5월)	
'22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추진계획 교육부 안내	'22. 3. 3.
'22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실행계획 승인 통보	'22. 3.22.
'22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안) 승인	'22. 5 .9.
'22년 산학협력단 실태점검단 선정	'22. 5.16.
수행단계('22년 5월~10월)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단 사전교육 실시	'22. 6. 3.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서면 및 현장) 수행	'22. 6.14.~10.28.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중간점검 수행 (총 3회)	'22.7.13/8.17/9.16.
종료단계('22년 11월~12월)	
실태점검 보고서 최종 검수회 개최	'22.11.2.~23.
대학재정자문위원회 개최	'22.12.22.

2. 실태점검단 구성 및 대상교 선정

가 실태점검단 구성

○ 구성 방법

-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실태점검단 구성
- 총 18명의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11, 직무경력자 7) 선정
- 외부전문가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및 감사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산학협력단 근무경력 또는 감사경력에 따라 가산점 부여

나 대상교 선정

○ 선정 방식

-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개 유형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후보군으로 선정 후 산학협력단의 규모, 설립주체(국·공립, 사립), 지역 및 학종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점검 대상(40개교) 선정

단계	유형
1	감사의견 부적정
2	인건비 비율 0%
3	미보유 자산 사용료 수익 발생
4	간접비 비율 0%
5	학교회계전출금
6	운영성과
7	예·결산서 제출 지연

< '22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대상교 현황 >

(단위 : 억 원)

연번	설 립	학 종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재정규모 유형	현금예산총액 (기초현금+현금유입액)
1	사립	대학	연세대학교	대규모I	6,136
2	국립	대학	부경대학교	대규모I	3,119
3	사립	대학	세종대학교	대규모I	1,060
4	국립	대학	제주대학교	대규모II	922
5	사립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규모II	551
6	사립	대학	대전대학교	중규모	463
7	사립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규모	402
8	사립	대학	경기대학교	중규모	379
9	사립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중규모	362
10	사립	대학	배재대학교	중규모	234
11	사립	대학	경일대학교	중규모	228
12	사립	대학	동명대학교	중규모	227
13	사립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규모	225
14	사립	대학	서원대학교	중규모	212
15	사립	대학	동신대학교	중규모	194
16	국립	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경상국립대)	중규모	191
17	사립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중규모	190
18	사립	전문	울산과학대학교	중규모	188
19	사립	대학	남서울대학교	중규모	183
20	사립	전문	영진전문대학교	중규모	179
21	사립	전문	경북대학교	중규모	173
22	사립	대학	목포해양대학교	중규모	170
23	사립	대학	호남대학교	중규모	170
24	사립	전문	대림대학교	중규모	169
25	사립	전문	부천대학교	중규모	164
26	사립	전문	한양여자대학교	중규모	163
27	사립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중규모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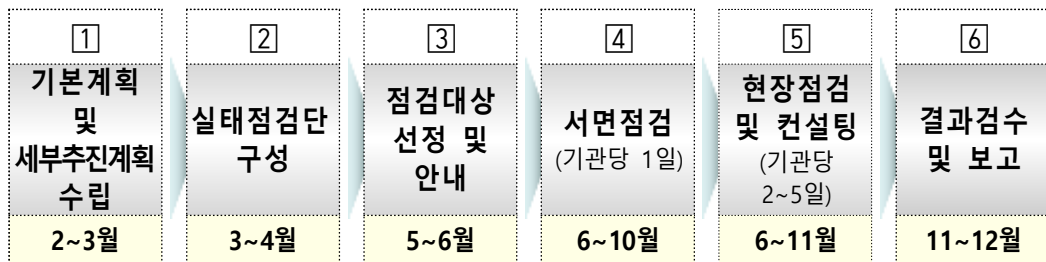
연번	설 립	학 종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재정규모 유형	현금예산총액 (기초현금+현금유입액)
28	사립	전문	제주한라대학교	중규모	125
29	사립	대학	한성대학교	중규모	122
30	사립	대학	서울여자대학교	중규모	119
31	사립	전문	동서울대학교	중규모	118
32	사립	전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중규모	113
33	사립	전문	안산대학교	중규모	109
34	사립	전문	한국폴리텍VII대학	중규모	107
35	사립	전문	수원과학대학교	중규모	106
36	사립	전문	한국관광대학교	소규모	34
37	사립	대학	강서대학교	소규모	16
38	사립	전문	강원관광대학교	소규모	5
39	사립	원격	한양사이버대학교	소규모	5
40	사립	전문	대동대학교	소규모	5

※ 현금예산총액(기초현금+당기현금유입액) 기준으로 대학규모를 구분 후 대규모 5개교(I 및 II), 중규모 30개교, 소규모 5개교 선정('21회계연도 기준)

3.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가 실태점검 프로세스

○ 업무 프로세스



○ 각 단계별 업무 추진 내용

단계	추진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추진계획 수립	▶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
②	실태점검단 공모 및 구성	▶ 실태점검단 구성 계획 수립 ▶ 실태점검단 공모 접수 및 심사 ▶ 실태점검단 위원 확정
③	점검대상 선정 및 안내	▶ 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최종 40개 산학협력단 선정 ▶ 40개 산학협력단에 실태점검 수행 통보 및 안내(서면/현장점검 제출자료, 일정 등)
④	서면 실태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의 자체 점검표 및 제출 자료를 이용한 서면 실태점검 실시
⑤	현장 실태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현장에서의 실태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규모에 따라 점검기간 구분
⑥	결과 검수 및 보고	▶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산학협력단 별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 대상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표별 분석 및 비교 대상 그룹과 비교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4. 주요 점검 항목

가. 주요 점검 항목

○ 각 유형별 점검 항목

- 총 69개 점검항목으로 실태점검 실시

구 분	항목 수	주요 점검항목
I. 예산 및 결산 일반사항		
1. 예산서의 작성 및 공개	6	▶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2. 결산서의 작성 및 공개	2	▶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3. 계약 관한 사항	3	▶ 적법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체결 등
II.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점검사항		
4. 자산	20	▶ 예금계좌 관리의 적정성(부외예금 존재여부 등) ▶ 타인 또는 타기관에 대여 또는 채무보증 여부 ▶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 학교기업 재고자산 관리의 적정성
5. 부채 및 기본금	6	▶ 임대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등
III.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점검사항		
6. 수익	12	▶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 협약서 및 내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적절히 인식되었는지 여부
7. 비용	17	▶ 과제별 산학협력비 및 지원금사업비의 지출이 적절히 정산·보고되는지 여부 ▶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의 적정성
IV. 세무		
8. 세무	3	▶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합 계	69	

II

'22년도 실태점검 주요 점검 사례

1. 유형별 지적사항
2. 주요 위반사례 현황
3. '22년 산학협력단별 점검결과



1. 유형별 지적사항

가 지적사항 유형별 구분

- '22년 실태점검 결과, 총 457건(평균 11.4건/점검교) 지적사항 확인
- 유형별로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 지적사항이 338건으로 가장 많음

구분	예·결산 일반사항	계약 관련	재무제표 작성 관련	세무	기타사항	합계
지적 건수	79건	13건	338건	11건	16건	457건

※ '21년 대비 계약 관련 부적정 비율은 하락(6.8%→2.8%)하였으나 예·결산 일반사항(15.4%→17.3%) 및 재무제표 관련 (71.1%→74.0%) 지적 비율은 상승

나 항목별 부적정 사례 건수

지적사항	지적 건수
[예산 및 결산 일반사항]	
예산편성요령에 따른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	12
예산총계주의의 준수 여부	1
예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8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4
예산 초과 집행 여부	22
결산 확정·제출 절차 및 법정기한 준수 여부	12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적정성	20
(국가지원금 집행 시) 계약의 원칙 준수 여부	5
내부규정에 의한 계약절차 준수 여부	8

지적사항	지적 건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예금계좌 관리의 적정성(부외예금 존재여부 등)	11
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의 적정성(계정과목 구분의 적정성)	4
금융자산 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1
미수금 및 미수수익 인식의 적정성	15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	10
선급금 및 선급비용 인식의 적정성	9
선급법인세 및 선급지방소득세 인식의 적정성	1
유·무형자산 취득 지출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22
감가상각비 인식의 적정성	8
유·무형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7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의 적정성	13
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의 적정성	3
임차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1
확정채무의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누락 여부	9
선수금과 선수수익 계정분류의 적정성	13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20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6
임대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10
기본금 인식의 적정성	6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10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수익 등 수익 세부구분의 적정성	19
다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을 협약비율에 따라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1
학교기업 운영 관련 수익과 비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기술이전수익 구분 및 인식의 적정성	6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인식의 적정성	7
연구수익 및 교육운영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적절히 인식하는지 여부	2
협약서 및 내부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적절히 인식되었는지 여부	7

지적사항	지적 건수
전입금수익 인식의 적정성	2
기부금 수취 및 사용의 적정성	4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4
연구비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세입처리하는지 여부	6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1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의 적정성	5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1)	7
연구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2)	5
연구수당 집행의 적정성	2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2
교육운영비 세부과목 구분의 적정성	9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	13
간접비 집행의 적정성	12
산학협력단 관리직원 인건비의 적절한 구분	3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집행의 적정성	13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3
일반관리비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적정성	5
운영외비용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적정성	9
학교회계전출금 인식의 적정성	5
내부거래가 적절히 제거되었는지 여부	6
[세무]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의 적정성	2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 적정성	7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에 대한 신고·납부의 적정성	2
[기타]	
회계관리시스템 미흡 등	16
합계	457

2. 주요 위반사례 현황

가 예산의 초과 집행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3조(예산의 전용)에 의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과부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

나 예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공개의 부적정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정관 상의 심의기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 B대학 산학협력단은 결산 시 외부감사 완료(감사보고서 일자)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함.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8조(부속명세서)에 의거 결산 시 잔액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하나,
 - C대학 산학협력단은 주요한 계정과목에 대해 잔액이 있음에도 계정 부속서류를 작성하지 않음.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제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하나,
- D대학 산학협력단은 기한 내에 '22년 예산부속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지 않음.

다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오류

- 특허출원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특허출원 결과가 종료된 이후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하여야 하나,
- E대학 산학협력단은 무형자산으로 계정대체를 하지 않았으며
- F대학 산학협력단은 특허 관련 선급금을 특허 출원번호별로 집계 되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시 대체금액을 과거 원장을 조회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있음에 따라 지식재산권 대체금액에 오류 발생.
- 특허권 양도 시 관련 특허출원비용 선급금 및 해당 무형자산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 G대학 산학협력단은 해당 계정과목을 제거하지 않음에 따라 선급금 및 무형자산 계정과목이 과대계상 됨.
- 지식재산권 매각 또는 사용료 수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고 기준 내 집행이 되어야 하나,
- H대학 산학협력단은 내부규정에 정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기술료 순수익의 7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라 간접비 집행 부적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3조(간접비 고시 비율 산출) 및 별표16에 따라 ‘간접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나,
 - I대학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시 계좌잔액을 중복으로 계상하여 실제 간접비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J대학 산학협력단은 대응자금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집행함.

마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변경(‘21.1.)에 따라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ex. 일반 기업체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 K대학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를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음

바 학교회계 귀속 수입 산학협력단 인식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거 대학 교비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L대학 산학협력단은 교비회계 기본재산인 건물을 입주업체에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을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인식 함.

사 기말 확정 채권·채무 미인식

- 회계연도 말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채무와 해당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나,
 - M대학 산학협력단은 소모품 구입비, 법인카드 사용 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 금액이 확정되어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면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 N대학 산학협력단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연구과제를 대금회수 지연을 사유로 미수금 및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O대학 산학협력단은 성과 평가 없이 간접비의 일정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 「연구장려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 P대학 산학협력단은 일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구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여 지급하였으며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자 연구활동비 지출 부적정

-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비를 지출할 때 적절한 증빙을 구비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Q대학 산학협력단은 전문가 활용비로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나, 결의서와 이력사항만 있고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를 구비하지 않음.
- S대학 산학협력단은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시 계좌이체를 제외한 모든 건에 대하여 담당자 등 개인카드 사용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운영함
- R대학 산학협력단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지출결의서만 있을 뿐 카드명세서를 포함하여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T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카드 집행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카드 사용 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결산시점에 세입처리 하지 않음

차 구매 계약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원금 집행 시 2천만원 이상 구매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 U대학 산학협력단은 자체 내규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함.
- 「연구비 관리운영 내규」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500만원 이상의 구매계약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중앙구매)을 하여야 함에도,
 - V대학 산학협력단의 일부 연구자는 500만원 이상의 동일 날짜 및 동일 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분할로 개별 구매한 사례가 있음.
- 구매·용역·공사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약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나,
 - W대학 산학협력단 일부 과제 수행에 따른 재료비 구매계약 체결 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제품을 동일업체로부터 분할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타 연구비 반납 시 회계처리 오류

- 연구과제 종료 후 반납액은 반납액 확정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전 확정 시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확정 시에는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 X대학 산학협력단은 전년도 반납이 확정된 연구비 잔액에 대하여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 Y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연구비 반납액을 연구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로 인식하였음.

3. '22년 산학협력단별 점검결과

※ 자료 참고시 유의사항 : 학교별 부적정 사례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위반사항의 중대성을 대표하지 않으며 산학협력단 업무에 도움이 될 사례를 선별한 것임

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정기 재물조사 미 실시 및 자산관리 미흡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료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자산관리대장과 재무상태표의 자산금액과 일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재물조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원주)는 재물대장과 실재 재물조사 결과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차이가 다수 발견됨
선수금 회계처리 오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입금 사유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과제 관련 선수금을 과제 진행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선급금 회계처리 오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특허출원 결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계정대체하지 않음. 또한, '09년 이후 발생한 카드지출 연구비 발생액 중 다수의 지출 건에 대하여 장기간 본 계정 대체 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지적재산권 보상금 초과 지급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상금 지급 시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식재산권심의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료 순수익의 65%~95%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2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비 관련 구매 부적정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운영 내규」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500만원 이상의 구매건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중앙구매)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연구자는 500만원 이상의 동일날짜 및 동일 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분할구매를 통하여 개별 구매한 사례가 있음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통하여 해당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연구비 반납액 회계처리 오류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전 연도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연구비 반납액을 연구비(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로 인식하였음

3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원금 집행 시 2천만원 이상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나, 자체 내규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함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오류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시 계좌잔액을 중복으로 계상하여 실제 간접비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지적재산권 보상금 초과 지급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상금 지급 시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고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술료 순수익의 7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연구시설 장비비 회계처리 오류	기계기구 등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하는 실험실습 장비 매입을 연구시설장비비로 비용처리하였음

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부채 미인식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채무와 해당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나, 연구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선수금 및 선수수익 계상 오류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원금수익-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 중 연구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수수익으로 계상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인센티브 지급 평가 부적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기술혁신센터는 규정에 없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심사자료, 평가위원 선정 없이 '21년 수입과 지출 차액인 수익만을 기준으로 지급함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전문가 활용비 부적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문가 활용비로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강사 위촉시 위촉계약서 및 지출 증빙 상 결의서만 있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및 전문가 활용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활용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음
대학 소유 건물 임대료 수령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유 건물을 대학과 별도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 절차 없이 53개 업체에 대해 임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입을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및 관리하고 있음
기부금 회계처리 오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에서 수령하여야 할 발전기금 약정서 및 기부금(장학금)을 일반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함
지식재산권 수익 회계처리 오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수익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양도 리스트가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중 실시수익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선급기술료 수령 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6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대학소유 건물 임대료 수령	교내에 소재한 대전대학교 소유 건물을 대학과 별도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 절차 없이 총 11개 업체에게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및 관리하고 있음
사업비정산 수수료 집행 부적정	사업에 대한 직접비로 지출하여야 할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에 대한 사업비정산 수수료를 '간접비사업비-연구지원비기관공통비용'으로 지출하였음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으며, 관련 비용 지출 시 참석자, 목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 관련 증빙을 작성하지 않음
특허권 출연 선급금 과대계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비용 중 자산성을 상실한 총 12건에 대한 출연비용은 '간접비사업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하여야 하나,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7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비국가과제 간접비 미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간접연구비의 징수 및 관리시행 세칙」 제4조에 따르면 간접연구비는 연구비 입금 시 징수(계좌이체 등)하여야 하나, 비국가과제인 XX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연구비 중 해당하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음
법인카드 마일리지 세입 미처리	반납 대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카드 집행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카드 사용 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연구비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결산시점에 세입처리 하지 않음
학교회계 전출금 과대계산	산학협력단이 비용처리하여야 할 재산세를 포함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전출하고 교비회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함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 「연구장려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구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여 지급하였으며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8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중앙구매 내부규정 미준수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운영 관련 내규」에 따르면, 단일 구매건으로서 추정가격 3,000천원 이상의 제조·공사·용역·임대차 계약은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용역계약 시 비교견적서만 첨부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였으며 자체구매 시 물품인수서 또는 납품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음
지식재산권 양도 시 회계처리 오류	특허권 양도 시 관련 특허출연비용 선급금 및 해당 무형자산을 제거하지 않음
정기재무 조사 미실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위탁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협약서(계약서)에 별도 조건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9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분할 수의계약 체결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구매·용역·공사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계약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과제 수행에 따른 재료비 구매계약 체결 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제품을 동일업체로부터 분할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특허등록 출원비용 관리 부적정	특허 관련 선급금에 대한 명세는 특허법인 거래처별로 금액이 집계되고 있으며, 특허 출원번호별로 집계되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시 대체금액을 과거 원장을 조회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있음에 따라 지식재산권 대체금액에 오류 발생
확정채무 인식 누락	결산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상 신용카드를 사용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아 관련 비용 및 미지급금이 과소 계상되어 있으며, 지급의무가 있는 소모품 구입비 등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비용 및 미지급금이 과소 계상됨
임대보증금 관리 미흡	임대보증금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임대보증금 명세서(임대계약서 기준) 상 임대보증금과 재무상태표 상 임대보증금이 불일치 함.

10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수금 과소계상	'22년 2월분 임대료수입에 대한 미수금 및 임대료수익을 회계처리 하지 않음.
유형자산의 비용처리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자산을 구입하면서 연구활동비로 당기 비용 처리함
대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취	산학협력단은 대학 소유 건물에 대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장기무상 사용승인(계약서 등 증빙 확인 불가)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및 임대보증금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식하고 있음

11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 초과 집행	산학협력보상금, 기타운영외 비용 등 8개의 항목의 비용을 최종 추가 경정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결산 확정 절차 미흡	산학협력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의 장의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해야 하나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대학 소유 건물 임대	학교 소유 건물을 대학과 별도의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 절차 없이 총 79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입을 산학협력단에서 수령 및 관리하고 있음
간접비지출 내역서와 간접비 통장 잔액 불일치	‘간접비 지출내역서’ 상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과 실제 간접비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잔액과 차이가 발생함

12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특허권 취득 시기 오류	특허권은 특허등록일에 특허권을 인식하고 상각을 개시해야 하나, 특허등록비용 지급시점에 특허권을 인식하고 상각을 개시하여 무형자산 상각비가 과소계상 되었으며 특허권이 과대계상됨
감가상각 오류	3월 취득 유형자산(기계기구)의 감가상각 월수를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계상되고 특허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인 7년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 전 내용연수인 10년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이 과대계상됨
기술이전 수익 인식 오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이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잔금 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 가능일 중 빠른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대여 또는 사용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현금주의 방식으로 수익 인식
종료 및 장기미정산 과제 선수수익 미제거	'21회계연도 기말 시점 선수수익 내 정산이 완료된 '19년도 종료 과제 및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17년 종료 과제 등이 선수수익에 포함되어 있음

13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오류	실습장 부지 임차 시 지급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하지 않음
교육운영비 계정분류 오류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강사료를 기타교육운영비로 처리하였으며 추후 납입할 1년 미만 근무자분 퇴직급여를 예수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미수금 미인식	용역제공이 완료된 연구과제를 대금회수 지연을 사유로 미수금 및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14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계약관련 내부규정 미비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구매 및 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음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익 미인식	'21회계연도 연구비카드 지출에 따른 마일리지 발생액에 대하여 세입 처리 수행하지 않음
예수금 세부내역 관리 미흡	결산서 상 잔액이 존재하는 예수금에 대하여 일부 세부 구성 내역 및 사유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존재함

15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구분관리 미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1.1 시행) 제51조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구분 관리하지 않음
자산 취득 지출 비용처리	소프트웨어, 실험용 기자재 등 자산성 있는 물품의 취득을 유형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기술이전 수익 인식 오류	특허를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기간동안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금 수령 시 지식재산권이전수익을 일시에 인식함
간접비 내부규정 미준수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규정」 제6조(간접비 징수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고시 또는 비(非)정률사업(자체 규정에 따라 간접비 책정이 가능한 사업)은 동신대학교 고시비율 및 직접비의 일정비율을 계상해야 하나 미(未)계상 또는 규정대로 계상하지 않음

16

경상국립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과제 소속변경 회계처리 오류	연구과제 소속변경에 따른 연구비 이관금액을 관련수입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타운영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함
기말 확정채무 미인식	'22.2.28.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에 대하여 관련 비용과 확정채무를 인식하여야 하나, 연구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자산의 학교회계 전출 회계처리 부적정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를 대학으로 기부채납하였으나 학교회계전출금이 아니라 연구시설·장비비로 회계처리함
산학협력단 회계단위 누락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 중 'GAST'와 '동물의료원' 및 농업생명과학 연구원 산하 생명환경분석센터가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이전 수익 인식 오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수취한 시점에 전액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17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부적정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과 별개로 '연구신청지원금' 명목으로 성과평가 없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과제 신청 경비를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예산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 절차가 없음
종료 과제 잔액 반납 회계처리 오류	연구과제 종료 후 반납액은 반납액 확정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전 확정 시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확정 시 '기타 운영외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전년도 반납이 확정된 연구비 잔액에 대하여 당기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

18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가과제 간접비 미구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1.시행) 제51조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ex. 일반 기업체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구분 관리하지 않음
장기미회수 채권 대손 미인식	연구 과제에 대한 불인정액을 과제 발주처에 대위변제하였으며, 해당 과제 주관기관 관계자로부터 대납 금액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대손상각을 하지 않음
전문가 활용비 지출증빙 미흡	전문가 활용을 위한 자문료로 집행된 금액 중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한 사례가 발견됨
산학협력 수익 구분 오류	산업체 또는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연구비는 협약서 상 취득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 등을 검토하여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으로 구분되어야 함

19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지급금 미인식	기말 지급의무가 확정된 거래에 대한 대금과 카드사용액에 대한 확정 채무가 일부 누락되어 미지급금과 관련비용의 회계처리가 누락됨
대학 소유 건물 임대료 수취	대학 소유 건물인 창업보육센터와 게스트하우스를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관련 임대료수익과 기타산학협력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인식하고 있음
간접비 예산편성 및 지출 과목 오류	산학협력단 사업 수주(LINC 3.0 등)를 위해 간접비(R&D) 재원으로 지원한 비용(여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을 '기타지원비'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2.1.1.부터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이 되었으나 가입하지 않았으며, 예산 또한 미편성 되어 있음
고유목적 사업준비 금 설정 부적정	세무조정 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운영차익처분 계산서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분 내역이 없음.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법인세를 납부함

20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지식재산 관리대장과 지식재산권 명세서 불일치	지식재산권명세서의 부실로 지식재산권명세서와 지식재산권관리대장에 등록된 특허자산 내역이 불일치함
대응자금 회계처리 오류	산학협력단이 대응자금 지출(RCMS계좌 이용) 시 선급금으로 인식하고 연구비용 지출 시 관련 비용을 선급금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대응자금 지출 시 비용으로 인식한 후 연구비 집행 시 연구수익과 비용을 인식함
기술지주회 사 출자금 집행 절차 미흡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합창업기술지주회사에 '21 회계연도 (추가)출자금을 지출하였으나, 해당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하여 정관상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별도 안건으로 상정 및 심의하지 않음

2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미수수익 미인식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수익 계정과목 오류	수행 과제 중 협약서 상 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발생 지식재산 권의 소유가 발주처로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과제는 산학 협력수익으로 인식하여여 하나 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함
무형자산 부외자산 관리	지식재산권 취득 시 출원 및 등록 지출을 비용(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으로 인식하여 재무상태표 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22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산학협력단 직무수행 인건비 회계처리 오류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인식하여야 할 파견·겸직 근무를 하는 대학 직원의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회계 처리함
자산관리 대장 미작성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산학협력단은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분실·폐기 등의 자산변동사항을 체크하고 재물조사 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산과 실물을 비교하여 손·망실 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건설중인 자산 미인식	공사 등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하여 본 자산 인식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ex 준공완료시점)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 후 본 자산 인식 시점에 대체 분개로 유형 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나, 관련 지출 시 비용[(국고)기타지원금사업비]] 처리함

23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지출내역서 와 계좌 잔액 불일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 시 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통장 잔액과 기타사업 간접비 통장 잔액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간접비 계좌 잔액과 간접비 지출내역서 상 기말간접비 재원이 불일치함
무형자산 미상각	지식재산권(특허권)의 상각을 하지 않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입액을 미지급비용(금)이 아닌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연구시설 및 장비 대여 절차 미비	산학협력단은 연구시설 및 장비를 산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여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24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간접비 수익인식 시기부적정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말 종료되지 않은 일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수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간 종료일에 일괄 인식하고 있음
사업비정산 반납액 계정과목 오류	'20회계연도 결산 전 반납이 확정된 연구과제 반납액을 관련 수익에서 차감 후 미지급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21회계연도에 반납시 기타운영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
예수금 회계처리 오류	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 및 4대 보험료의 본인부담분을 제세 예수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반납의무가 없는 사업비 정산금액을 기타운영외수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5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전문가 활용비 집행 부적정	연구활동비 내 전문가 활용비로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나, 전문가활용 내역서가 활용분야를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활용에 따른 결과(ex. 자문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부재함
회의비 사용 통제 미비	2개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 연구원이 회의를 참석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비를 이중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됨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미가입 및 예산 미편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연구기관은 '22년 1월부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가입하지 않았으며, 예산 또한 미편성 되어 있음

26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선급법인세 미계상	이자수익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선급법인세로 계상하지 않음
확정채권에 대한 미수금 미인식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과 관련하여 받을 권리가 확정된 수취 채권 일부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학교기업과 내부거래 미제거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에 출자한 금액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나 상계되지 않아 자산, 자본이 각각 과대계상됨

27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비 대여 내부통제 미흡	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19 조 (사용) 제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구자지원제도에 따라 연구 기간 중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 차용금의 용도, 변제의 방법 및 변제기일을 정하고 있으나, 변제기일 경과 1~2개월 이후 회수함
간접비 집행 관리 미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2건에 대한 대응자금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집행됨
미지급금 미인식	'22.2.28. 이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22회계연도에 결제되는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 누락됨

28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실 안전관리비 미편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총액의 1%이내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연구실안전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타회계 비용 산학협력단 지출	제주한라대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특임부총장 인건비 및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이사회개최 비용 등 제주한라대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산학협력단에 지출함
수당(성과급) 지급 관련 내부규정 미준수	산학협력단의 내부규정 내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수당 지급 시 산학협력단장의 전결로 작성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직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지급함
간접비지출 계정 미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수익 외 민간과제 등에서 발생한 간접비수익도 간접비수익-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수익 재원 집행 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일반관리비가 아닌 간접비 지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과제와 관련된 간접비수익은 해당 과제 직접비 수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지출 시 일반관리비로 인식함

29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지식재산권 회계처리 오류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 시점 선급금으로 인식된 후 출원 심사 결과 특허 등록이 완료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매 회계연도 선급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금액이 발견됨
기술이전 수익 인식 오류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대여 또는 사용기간 동안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현금주의 방식으로 수익 인식한 사례가 발견됨
예산편성 및 집행 내부통제 미흡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가 동일한 부서 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30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비 반납 회계처리 오류	연구과제 종료 후 반납액은 반납액 확정 시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전 확정 시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확정 시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전년도 반납이 확정된 연구비 잔액 및 이자수익을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음
여비교통비 규정 미준수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지침」에 따르면, 여비교통비는 실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됨
기부받은 유가증권 매각 시 회계처리 오류	기부받은 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운영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유가증권 처분가액 전액을 운영외수익(유가증권 처분익)으로 인식하였음

31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산학협력 수익 및 지원금수익 구분 오류	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대가성 없는 연구수익을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함
학생인건비 지급 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는 학과, 연구부서 및 연구책임자 등의 차별 없이 계상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에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
연구수당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미흡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에 대한 평가 등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없이 연구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에도 간접비 적립액 외 별도의 평가 없이 지급하고 있음

32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편성 요령 미수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요령을 작성하지 않음
예산 부속서류 미공개	산학협력단은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1년 간 공개하여야 하나, 22년 예산부속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였음
민간과제 간접비 미인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산업자문비의 10%를 간접경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인식하지 않은 산업자문계약 사례가 발견됨

33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조에 따라 연구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여야 할 시제품 제작비에 대해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과소 설정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의거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이연이 가능함에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타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구입(자본적지출)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승강기 설치 등에 대한 지출을 기타지원금사업비로 비용(수익적지출)으로 회계처리함

34 한국폴리텍Ⅶ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심의 기구 회의록 미작성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르면 심의기구(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22년 본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
교육용역 수익 회계처리 오류	평생교육원 수강료, 최고경영자과정 수강료는 교육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회계처리함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익 미인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카드 집행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법인카드 사용 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하나, 세입처리하지 않음

35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연구재료비 회계처리 오류	'21년 학년도부터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로 구분 변경되었으나, 연구재료비로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계정과목 분류에 오류 발생함
대학소유 건물 임대료 수령	산학협력단이 대학 소유 건물 및 시설을 협력업체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대학 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일반기업 등 외부에 임대하며 수취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어야 함. 한편, 산학협력단이 해당 건물을 목적사업 활용 시에는 대학과 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취업규칙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음

36 한국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결산 확정 및 제출 법정기한 미준수	산학협력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정관 상의 심의기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1년 결산에 대하여 외부감사 완료(감사보고서 일자 '22.5.3) 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함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계정분류 오류	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한국연구재단의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개발 사업과제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유형) 관련 수익을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함
예산 초과 집행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규모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과부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운영외비용 등 2개 과목의 비용을(최종추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함

37 강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국가과제 간접비 구분관리 미흡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1.1.시행)」제51조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민간(ex. 일반 기업체 등)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않음
수익-비용 인식 비대응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에 따른 비용 지출 시 수익 구분에 따라 산학협력연구비용(산학협력수익과 대응)과 지원금연구비용(지원금수익과 대응)으로 구분 인식하지 않고 혼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음
간접비 수취 부적정	강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5%를 간접비 수취율이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과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비율에 의하지 않고 간접비를 수취하였으며, 간접비 수취 관련 내부규정 상 '민간 연구과제 간접경비의 징수 비율은 총액기준 최소 15%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간접비를 수취하지 않음

38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예산 미편성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예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 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2년 예산을 미편성하였음
결산서 미작성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하여 결산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년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자산관리 부적정	산학협력단은 정기재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폐기자산에 대한 승인내역, 폐기물품, 폐기사유를 확인할 증빙이 구비되지 않음

39 한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물품 구매규정 및 연구비 관리규정 미비	산학협력단의 구매계약 규정과 연구비관리규정이 부재하여 대학의 '구매계약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출연기본금 회계처리 오류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면서 대학으로부터 출연받은금액을 출연기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전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본금이 과소 계상되고 전기이월운영차익이 과대계상되어 있음
수탁사업 예·결산 미반영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기타지원금수익과 관련비용이 과소계상됨

40

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지적 사항
교비회계 자산 무상 사용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 중인 학교기업은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대관료 등 수입을 수취하고 있으나 대학에 시설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음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할 수 없음. 따라서, 교비회계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와 산학협력단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적정한 대가를 교비회계로 지급하여야 함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집행 부적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접비의 일정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함
학교기업 실습지원비 미지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할 실습 참여 학생(120시간 참여)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 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